

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일 자 리 경 제 과

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



구 미 시

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4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구미형 일자리 노사민정 상생협약 이행사항 추진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

나.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설립에 따른 출연금을 2024년 회계연도 및 2025년 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1) 출연기관 :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
- 2) 소 재 지 :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17, 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3) 출연금액
 - 2024년 : 600,000,000원
 - 2025년 : 300,000,000원
- 4) 사 용 처 :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상생협력기금 조성

나. 사업 개요

- 1) 사 업 명 :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

2) 사업기간 : 2024년 9월 ~ 자금 소진시까지 (‘24년)

2025년 1월 ~ 자금 소진시까지 (‘25년)

3) 사업내용 : 구미형 일자리 노사민정 상생협약사항인 상생협력기금
운용 및 센터운영관리를 통한 기업 및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한
지원사업

- 지역기업 역량강화 및 조직개발 워크숍 실시
-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
- 에너지 동반성장 활동, 안전·보건 지원
- 생산성 향상, 디지털 혁신 분야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기업 컨설팅 지원
- CSR(기업의 사회적 책임)평가, ESG교육 및 평가지원 컨설팅 지원
- 관내 이차전지 관련기업 소재 지원 사업

다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2)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
- 3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- 4) 「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」 제7조제1항, 제2항

3.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가.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인력채용 공고 : 2024. 6~7월

나.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운영 : 2024. 8월

다.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상생협력기금 출연 : 2024~2027년

4. 기대효과

- 가. 기금운영을 통해 구미형 일자리 상생기업[(주)LG-HY BCM]과 구미 소재의 이차전지 관련기업 및 종사자에게 상생협력사업, ESG기반 구축사업 등 프로그램 제공하여 구미시 이차전지 소재 산업 육성에 기여
- 나. 지역 산업 및 경제를 활성화하여 이차전지산업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이차전지 기업지원 및 노사상생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상생문화 확산하고자 함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

제14조(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 ① 시·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·군·구의 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협의하여 해당 시·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
2.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
3.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

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, 집적(集積)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,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·초광역권산업 및 제4항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재원의 조달)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3. 대학, 연구소,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

4.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
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·보조할 수 있다.

□ 「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」

제7조(지원 및 촉진사업의 추진) ① 시장은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지원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구미형 일자리 관련 실태조사, 컨설팅, 연구사업
2. 구미형 일자리 모델의 창출·확산 및 정착을 위한 사업
3.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약 및 핵심의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
4. 구미형 일자리 관련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·지원 사업
5. 고용안정·유지·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에 필요한 사업
6.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및 갈등해소, 노사상생프로그램
7. 노동복지 증진 및 노·사·민·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
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·사·민·정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상생협력기금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재정수반요인 발생
2. 비용추계의 전제 : 노사민정 상생협약서('21.11.10)를 바탕으로 경북도, 구미시, 민간기업에 출연금 책정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합계
세출	600	300	300	300	1,5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합계
국 비	-	-	-	-	-
도 비	600	300	300	300	1,500
시 비	600	300	300	300	1,500
민 간	3,200	-	-	-	3,200
기 타	-	-	-	-	-
합 계	4,400	600	600	600	6,200

5. 부대의견 : 없음

6. 작 성 자 :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이태인(☎480-2605)

소 관 부 서		일자리경제과
입 안 자	과 장	박 영 희
	팀 장	박 명 희
	담 당 자	이 태 인 (480-2605)